기술경영전문대학원 운영내규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제 5 장 학점이수 및 졸업

제17조(졸업요건)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각 졸업 일람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수업연한	4학기 이상	4학기 이상	8학기 이상
이수학점	45학점	36학점	54학점
필수이수 교과목	·연구방법론 ·선택필수 6과목	·고급연구방법론 ·선택필수 3과목	·연구방법론 ·고급연구방법론 ·선택필수 6과목
평균평점	3.0 이상		
외국어(영어) 요건	· TOEIC 730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어학성적 · 영어전용 수업 2과목 수강 B학점 이상		
학위논문 (매년 5월/ 11월 심사)	학위논문 또는 캡스톤 보고서	학위논문 심사 통과	
종합시험	해당 없음	전공 4과목 통과(각 60점 이상) – 선택필수 3과목 포함	
연구업적	해당 없음	등재지 단독저자 기준 2편 이상 (SSCI/SCOPUS급 해외저널 등재 1편 이상 포함)	

② 필수이수과목의 수강이 불가한 경우(예: 휴학, 폐강 등의 사유) 학과주임과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대체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수업연한 및 등록기간)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며,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학칙 상 4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3년 이내에 졸업 이수학점을 취득할 시에는 수업 연한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7년,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수학점 및 교과목)

① 모든 과정 재학생은 매 학기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과정별 필수 이수학점 및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전공필수	● 프랙티컴 12학점	● 고급연구방법론 3학점	● 프랙티컴 12학점

			● 고급연구방법론 3학점 (3학기 이후)
선택필수	● 선택필수 과목 중 9학점(3과목)		
전공선택	24학점	24학점	30학점
총이수 학 점	45학점	36학점	54학점

구 분	교 과 목	
전공필수	● **석사학위과정 (12학점)** : 프로젝트 프랙티컴 1~4 ● **박사학위과정 (3학점)** : 고급연구방법론(1학기)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15학점)** : 프로젝트 프랙티컴 1~4, 고급연구방법론	
전공선택 (선택필수)	**아래 과목 중 선택 3과목 (9학점)** 석·박사학위과정	
	● 기술경영조사방법론 ● 기술경영개론 ● 기술혁신론 ● 혁신경영론 ● 기술사업화론 ● 신제품개발론 ● 디자인기술경영 ● 기술경영계량분석	● 기술과 경제학 ● 기술예측방법론 ● R&D관리 ● 서비스혁신과 방법론

③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입학 후 2년간 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한 요건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박사학위과정 요건도 이수해야 한다.

제20조(성적평가 및 학점분포)

①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기준은 A+ 20%, A이상(A+ 포함) 60%로 한다.

② 영어전용강의 및 박사학위과정 전용 수업 등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별도 과목은 전항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어요건)

졸업을 위한 외국어(영어)요건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충족 가능하다.

1. 본 대학원에서 정한 어학점수 기준표에 따른 공인어학성적 제출하는 경우(단, 유효기간 내 증빙 서류만 인정함) 본 대학원 공인 어학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TOEIC	TOEIC Speaking	TOEFL			TEPS		TEPS Speaking	G-TELP		OPIc
			PBT	CBT	IBT	점수	급		Level 2	Level 3	
영 어	730	130	550	213	79	638	2	52	73	96	IM2

2. 영어전용 수업 2과목 B학점 이상 이수로 대체가능 하다.(단, 박사학위과정 인정학점의

경우, 영어 전용수업임이 증빙되어야 함)

제22조(박사학위과정 학점 인증 기준)

석사학위과정 또는 상위 과정의 취득학점 중 최대 12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양식] 박사학위과정 인정학점 신청서

1.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인문계열 미 인정(단, 특수대학원 중 특허 또는 지재권 분야, 과학기술정책분야 특수대학원은 3학점 이하 인정)
2. 일반대학원 이공, 경제, 행정, 정책 계열 6학점 이하 인정
3.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또는 MBA 9학점 이하 인정
4.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기술경영학과 12학점 이하 인정

제23조(박사학위과정 및 석·박통합학위과정 연구업적)

① 박사학위 논문 청구를 위해서는 전문학술지에 단독저자 기준 2편 이상 논문(200%)을 게재(또는 게재 예정)하여야 하며, 이 중 국제저명학술지 (SCI/SSCI급, SCOPUS급, 또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컴퓨터과학분야 proceeding)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또는 게재예정 증명서 제출) 하여야 한다. 게재예정 증명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문서 (예, 이메일 내용 등 지도교수 책임 하에 인정 가능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단, CONFERENCE PROCEEDING 은 국제저명학술지에 포함시키지 않음)

② 전문학술지라 함은 SCI(E)/SSCI/SCOPUS 급 국제학술지, 기타 국제학술지 및 연구재단등재 (후보) 학술지를 말한다.

③ 모든 실적 논문에는 지도교수가 공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 소속기관은 한양대학교로 명기되어야 한다. 참여자 수에 따른 인정 비율은 지도교수와 본인 2명인 경우 100%, 지도교수와 본인 이외에 공저자가 1명씩 추가 될때 마다 70%, 50%, 30% 등으로 차등 인정한다. 학생이 직접 발표한 국제학술대회 PROCEEDING의 경우 전문학술지 논문 실적의 1/2해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최대 100% 인정).

④ 모든 실적 논문에 학생과 지도교수 이외의 제3자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가). 학생이 주저자인 경우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만 인정
나). 학생이 교신저자인 경우에 지도교수가 주저자인 경우에만 인정

⑤ 본대학원 재학생 또는 본 대학원 교수 (1 또는 2소속) 가 제3자로 공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등의 역할 구분 무관)로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④의 내용에 제한 받지 않는다.

⑥ 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이외의 경우에는 졸업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4조(협정 대학원 및 타 대학원 수강)

① 입학 후 1학기 이후부터는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가 맺어진 협정 대학원이나 타대학원에서 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을 매년 최대 3학점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통산 9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전공이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 이전에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양식] 타대학원 수강 인정 신청서

② 교육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시 3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학생 (지도교수 포함)에게 통보한다.

③ 일반적으로 기술경영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협정 대학원 및 타 대학원 강의 개설 상황과 학생의 기존 이수 과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인정 받지 않은 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졸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지도교수

제25조(지도교수 배정)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1학기 이후 지도교수를 배정하며, 박사학위과정은 입학 후 지도교수 배정이 가능하다.

② 지도교수 선정방식 및 배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교수별 지도 부담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지도교수의 자격)

① 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2년 이상, 박사학위(석·박사통합학위과정 포함) 과정 학생의 경우 3년 이상 지도 할 수 있는 전임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전담교원의 경우, 최초 재임용을 통과한 교원에 한하여 지도교수 자격을 인정한다.

③ 지도교수 자격은 제12조에서 정하는 대학원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의 지도교수 자격인정 여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④ 겸임교원의 경우, 「한양대학교 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7조(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 변경은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1개 학기, 박사학위(석·박사통합학위과정 포함) 과정의 경우는 2개 학기 이상 새로운 지도 교수로부터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 변경은 최초 지도교수 결정 이후 최소 두 학기 이후부터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양식(학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의 변경 기준을 준용하되,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제 7 장 캡스톤프로젝트보고서 및 논문

제28조(캡스톤프로젝트보고서 및 논문)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캡스톤프로젝트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또는 학위논문을 졸업요건으로 인정한다.

제29조(보고서 및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로, 45학점 이상 취득 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2.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 상태인 자
3. 직전학기까지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4. 외국어(영어) 요건 충족한 자 또는 해당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5. 전공필수 과목, 선택필수 과목 이수 요건 충족한 자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로, 36학점 이상 취득 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 상태인 자
3.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 학기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4. 예비 발표일로부터 1개 학기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재학 연한내에 외국어(영어) 요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직전학기까지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7. 연구업적 요건 충족한 자

제30조(보고서 및 학위논문 심사프로세스)

① 석사학위과정의 보고서 심사는 지도교수가 평가하며 석사학위과정 보고서 심사결과표 [양식]에 따른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심사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단, 세부 일정은 학기 운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졸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구 분	수 행 자	일 정	비 고
연구계획서 입력	대학원생	- 석사 3기	- 연구계획서 입력 이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행정팀에 제출
지도교수 변경신청	대학원생	- 연구계획서 입력 이후	- 변경 이후 최소 1학기 지도 필요(제27조 1항)
논문 심사 예정자 확인	전체 교수	- 학위청구 논문 발표 학기중 (학사일정 참조)	- 지도교수는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논문심사 대상자를 결정하여 행정팀에 제출 (모든 학생들은 캡스톤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의무)
심사위원 선정	졸업위원장	-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이전 까지	- 졸업위원장은 졸업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 학생별 심사위원 구성 - 모든 교수들에게 균등하게 심사위원은 역할 배정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대학원생	- 학위청구 논문 발표 학기중 (학사일정 참조)	- 심사위원 구성 완료 이후

1차(공개) 심사	전체 교수	- 1차 공개심사는 11월 중 (학사일정 참조)	- 논문 발표본만 제출 - 1차 심사는 공개발표로 진행하여 심사위원 이외의 교수 의견을 개진하여 논문 품질 제고
2차(서면) 심사 및 3차(종심) 심사	심사위원/ 지도교수	- 2~3차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본을 학사일정에 따라 행정팀으로 3부 제출 (행정팀은 각 심사위원에게 논문 전달)	- 심사위원 심사기간은 11월 4주 ~ 종심일(약 3주간) *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은 학사일정 참조 -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본 제출 등의 심사과정 진행 - 논문 종심은 매 학기 종료 이전 - 논문 종심 시에 지도교수는 인준서 3부 준비하여 심사위원들의 날인 득함 - 종심 이후 심의결과를 심사보고회에서 대학원장에게 보고함
논문심사 이후 행정처리	대학원생	- 종심이후 1주일 이내	- 인준서(지도교수로부터 받음), 논문 겉 표지, 제출문, 윤리서약서(국,영) 등을 행정팀에 제출 * 논문인쇄본 제출(백남학술정보관), 제출확인서(행정팀) 등의 일정은 학사일정 참조 * 표절방지 관련 사항은 지도교수 책임 하에 처리함

③ 석·박사통합학위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논문심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단, 세부 일정은 학기 운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졸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구 분	수 행 자	일 정	비 고
연구계획서 입력	대학원생	- 박사 3기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5기	- 연구계획서 입력 이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행정팀에 제출
지도교수 변경신청	대학원생	- 연구계획서 입력 이후(삭제)	- 변경 이후 최소 2학기 지도 필요(제27조 1항)
심사위원 선정	지도교수	-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이전까지	- 심사위원의 선정방법은「한양대학교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36조」에 따른다. - 심사위원은 본 대학원 (1 또는 2 소속) **교수**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 외부(학교외부) 심사위원 1인 이상 등 총 5명으로 구성 - 졸업위원장과 협의 후, 대학원장이 최종 심사위원을 확정함 - 심사위원장은 1차 심사 시점에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 - 심사위원 구성 시에 1차 심사 일정 확정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대학원생	- 학위청구 논문 발표 학기 중 학사일정에 따라 접수	- 심사위원 구성 완료 이후
논문 심사	심사위원/ 지도교수	- 심사일정은 심사위원간의 합의를 통하여 확정	- 1~5회 심사 중 최소 1회 공개발표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일정과 장소를 행정팀을 통해 공지한다. - 논문 종심(5차)은 매 학기 종료 이전 - 논문 종심 시에 지도교수는 인준서 5부를 준비하여 심사위원들의 날인 득함 - 종심 이후 심의결과를 심사보고회에서 대학원장에게 보고함 *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은 학사일정 참조
	대학원생	- 논문 1차 심사 이전 까지 연구성과 확인서 제출 [양식]	- 연구성과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 서명 후, 첨부자료와 함께 행정팀 제출 - 졸업위원회에서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결과 통보 (필요 시 지도교수가 위원회 참석) - 이수학점, 외국어성적, 예비발표 여부 등 기타 졸업자격 사항도 함께 확인

논문심사 이후 행정처리	대학원생	- 종심이후 1주일 이내	- 인준서(지도교수로부터 받음), 논문 겉 표지, 제출문, 윤리서약서(국,영), 국문요지, 영문요지 등을 행정팀에 제출 * 논문인쇄본 제출(백남학술정보관), 제출확인서 (행정팀) 등의 일정은 학사일정 참조 * 표절방지 관련 사항은 지도교수 책임 하에 처리함

제 8 장 종합시험

제31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재학생이거나 연구등록을 한 수료생의 경우에 한하며, 직전학기까지 취득학점 평균이 3.0이상으로, 이수학점 30학점이상, 선수학점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제3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내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희망시험과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시험과목 및 절차는 학과주임이 결정한다.

제33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3~4월과 9~10월 중에 실시한다.

제34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선택필수 과목 중 3개 이상이 포함된 총 4과목의 시험에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5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과목 중 낙제과목이 1과목인 경우에는 낙제된 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낙제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전 과목을 재 응시하여야 한다.
③ 재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정기간 이내에 해당 과목의 구술시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제 수행을 통하여 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 9 장 장학

제36조(장학전형)

장학금 수혜 인원수, 등급별 배정 인원수 등은 매 학기 장학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신입생 장학제도)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인원수는 장학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단, 입학지원서에 산업체 학비지원 (전액 또는 일부) 여부를 명기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재학생 장학제도)

① 장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평점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장학예산에 따라 지급 대상 인원수를 결정한다. (단, 박사학위 (석•박사 통합 포함) 과정은 6학점 이상 수강자 대상으로 한다).

② 장학생은 매 학기말 장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 39조 수행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공지된 기한 내에 [양식] 수행평가표(학생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장학생의 경우, 1학기 후 지도교수 선정과 함께 결정하며, 논문 졸업과 공인 영어 성적으로 외국어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필수로 한다.

④ 연구장학생 선정 이후 변동 혹은 포기 시, 졸업 시까지 장학대상에서 제외되나, 논문졸업 의무는 유지된다.

⑤ 휴학생이 복학 하는 경우 복학하는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

⑥ 입학 시 제출한 산업체의 학비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변경 상황을 확인 후 장학금을 결정한다.

제39조(수행평가)

대학원생의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인턴활동, 학술활동, 참여 및 대학원 기여 등을 고려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장학위원회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석·박사 통합학위과정 포함)과정의 수행평가 항목 및 배점을 결정하여 평가한다.

[**석사학위과정 수행평가 항목 및 배점]**

항 목	배점	비 고
학업 성적	45	● 학기당 평균 평점
학술, 산학, 기여 및 봉사활동	55	● 특허 및 기술사업화 ●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full paper)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abstract) ● 대학원 행사(초청세미나 등) 참가 ● 원우회 활동 참가 ● 산학 프로젝트 제공 ● 인턴 프로그램 제공 ● 입시지원 및 홍보활동 ● 사례개발 등 산학협력과제 제공 ● 기타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박사학위과정 수행평가 항목 및 배점]

항 목	배점	비 고
학업 성적	30	● 학기당 평균 평점
학술 활동	40	●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full paper)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abstract)
혁신, 기여 및	30	● 특허 및 기술사업화

봉사활동		● 원우회 활동 참가 ● 대학원 행사(초청세미나 등) 참가 ● 산학 프로젝트 제공 ● 인턴 프로그램 제공 ● 입시지원 및 홍보활동 ● 사례개발 등 산학협력과제 제공 ● 기타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수행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배점	내역
학술활동	학술대회 (/회)	국 제		7	1. 참여자 및 발표자에 관계없이 동일 배점 2. '국제'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국제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발표한 경우에 한함(장학위원회가 최종 판단함)
		국 내		3	
	전문학술지 (/편)	국제상위	제 출	4	1. 복수 저자의 경우 50% 부여(단,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경우 저자 수에서 제외하고 산정) 2. 국제상위는 SCI급, 국내상위는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3. 동일 학기 내에 제출과 수록이 이루어지면 수록에 대해서만 배점 4. '수록' 여부는 Acceptance Letter를 받은 경우까지 인정함
			수 록	20	
		국제기타	제 출	2	
			수 록	10	
		국내상위	제 출	2	
			수 록	10	
		국내기타	제 출	1	
			수 록	5	
	학술상 수상	국제/국내, 학술대회, 학술지		최대 10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및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수상 등을 구분하여 상기 장학위원회가 10점 이내에서 점수 결정
혁신활동	특 허 (/건)	국내출원		5	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학과교수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직무발명으로 구분되어 수행평가 시 고려하지 않음 2. 다수 참여의 경우 2인 50%, 3인 이상 30%까지 인정 3. 동일 특허에 대해 출원과 등록 각각 인정
		해외출원		10	
		국내등록		10	
		해외등록		20	
	기술 사업화 (/건)	창업 및 운영		최대 20	1. 입학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평가 2. 기술사업화 해당 여부 및 창업자/참여자 등 기여도의 평가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기타 산학 (/건)	대회 출전 및 시상		최대 10	대회의 중요도 및 대회 출전시 기여도는 지도교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 점수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기여활동	원 우 회	원우회 기여		최대 10	참여 및 기여도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프로젝트 및 인터 (건)	기회 제공 / 조력		최대 10	학과에 연구 또는 산학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 또는 동료 원우에게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조력하는 경우
	기 타	사례개발 (/건)		최대 10	수행성과 여부의 인정, 참여 및 기여도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부 칙

부칙 (2017.03.03)
(시행일) 이 내규는 2017.03.03.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개정된 내용은 2017.12.06.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개정된 내용은 2018.08.29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개정된 내용은 2018.09.22부터 시행한다.